

영종국제도시 동원로얄듀크(A31BL)

특별공급 안내문

※국토교통부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과 관련한 서류 접수 방법을 '우편 접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건본주택 접수 불가)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 예정자, 예비자)로 선정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인터넷 미청약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건본주택에서 청약신청 시 자격입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1) 공급규모

- 가.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71-4(영종하늘도시 A31BL)
- 나. 공급규모 : 지하 2층, 지상13~20층, 8개동 총 4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기관추천)/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82세대 포함]
- 다. 주 택 형 : 79㎡A, 79㎡B, 84㎡, 84㎡A

2) 기관별 공급 세대수 (예비자 세대수)

주택형			79A	79B	84	84A	합계
전용면적			79.2348	79.4994	84.9841	84.9841	
총 세대수			68	76	267	1	412
일반(기관추천)/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세대수 (괄호안의 숫자는 예비입주자 세대수)	장애인	인천광역시	2(6)	2(6)	5(15)	-	9(27)
		서울특별시	1(3)	1(3)	3(9)	-	5(15)
		경기도	1(3)	1(3)	3(9)	-	5(15)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등		1(3)	1(3)	3(9)	-	5(1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3)	1(3)	3(9)	-	5(15)
	장기복무 제대군인		-	1(3)	3(9)	-	4(12)
	중소기업 근로자		-	1(3)	3(9)	-	4(12)
	북한이탈주민		-	-	2(6)	-	2(6)
	우수선수		-	-	2(6)	-	2(6)
	소계		6(18)	8(18)	27(81)	-	41(123)
경제자유구역			6(18)	8(24)	27(81)	-	41(123)
합계			12(36)	16(48)	54(162)	-	82(246)

- 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 공급내역이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변동시 재통지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② 지역배분에 맞추어 해당지역별 추천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지역별 신청자 미달시 타 지역 신청자를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급일정 안내(예정)

구분	일정(예정)		비고
특별공급 사전접수 (우편 접수)	2020.07.23.(목) 까지		① 우편 접수 주소(등기발송 필수) - 영종국제도시 동원로알뜰크 건본주택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② 해당 기간 내 서류 미제출 및 누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제외
입주자 모집공고	2020.07.17.(금)		- 홈페이지(http://www.dongwonapt.co.kr)
건본주택 개관	2020.07.17.(금)		- 사이버 건본주택 오픈 홈페이지(http://www.dongwonapt.co.kr)
특별공급 접수일자	인터넷 청약	2020.07.27.(월) 08:00~17:30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당첨자 및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2020.08.04.(화)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개별조회
계약 체결	2020.08.17.(월) ~ 2020.08.20.(수) 10:00~16:00		① 장소 : 건본주택(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②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건본주택 방문일이 상이 하오며, 당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안내 예정입니다.

- ①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여부를 확인 후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② 해당기간 내 서류 미접수 및 서류 미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상기 특별공급 사전접수와 관련한 서류일체는 해당 기간 내 우편 접수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④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⑤ 인터넷 청약 신청을 위해 반드시 신청일 전 은행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⑥ 상기 일정은 인·허가 및 업무 추진 중에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신청 전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특별공급 사전접수 구비서류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을 사전접수 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되는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통	재직회사	재직회사 발급(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		사업자등록증 1통	재직회사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1통	재직회사	법인신청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재직회사	
	○		재직증명서 1통	재직회사	소속업체 인감 날인된 재직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재직기간 명시(필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본인	-소속업체 인감 날인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이상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		특별공급신청서	-	소속업체 인감 날인 제출(경제청 및 당사 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 참고)
	○		무주택서약서	-	경제청 및 당사 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 참고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경제청 및 당사 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 참고	
○		청약통장 가입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본인	이름, 청약예치금 및 청약통장 가입일 및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국감정원 → 청약통장 가입내역 → 인쇄 / 이용시간 08:00~17:30)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팩스 또는 인터넷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발급)	
내국인	○		신분증 사본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서명)	본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가능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날인필수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배우자 (분리세대)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 전체포함, 세대구성, 사유,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		주민등록(표)초본 1통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본인	주민등록번호 및 세대원 전체포함(상세발급)
	○		외국인 등록증	본인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
	○		국내거소 사실확인서	본인	재외동포 신청의 경우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 ※상기 모든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인 **2020.07.17.(금) (예정)** 1개월 이전까지 발행분(세대 구성원 변동 시 변동된 날 기준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접수가능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함.)
- ※신청자의 착오 및 미기재, 서류 위변조 등으로 인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제외, 청약 신청분의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 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 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일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시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4. 특별공급 유의사항

1)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 분	내 용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점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경제자유구역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②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은 제외)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된 자 중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인천광역시</th> <th>서울특별시</th> <th>경기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50만원</td> <td>30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400만원</td> <td>6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700만원</td> <td>1,0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 면적</td> <td>1,000만원</td> <td>1,5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p>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2)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특별공급 신청서를 사업주체에 접수하고,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접수된 특별공급 신청서와 관계서류 확인 후, 일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대상 기준 및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기관추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됩니다.
 ※ 해당 기관 추천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기관 별 순위 선정 시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자(50%),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50%) 순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 후 당첨 시 개별 문자 통지 예정입니다.
- 당첨자 선정 업무와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의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으로 실시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및 제26조에 의거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미계약 등으로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유형별 구분 없이 타입별 배정물량의 300% 범위에서 선정합니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하며, 외국인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종사자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제8조)

3) 기타 유의사항

- 사업주체는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 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거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 해당 구비 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0.00.00.(금)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 하시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 등은 '영종국제도시 동원로알뜰크' 건본주택 및 안내 서류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7.17.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본주택 안내(문의전화 : 1588-0916)



평면도

79A 확장 평면도



79B 확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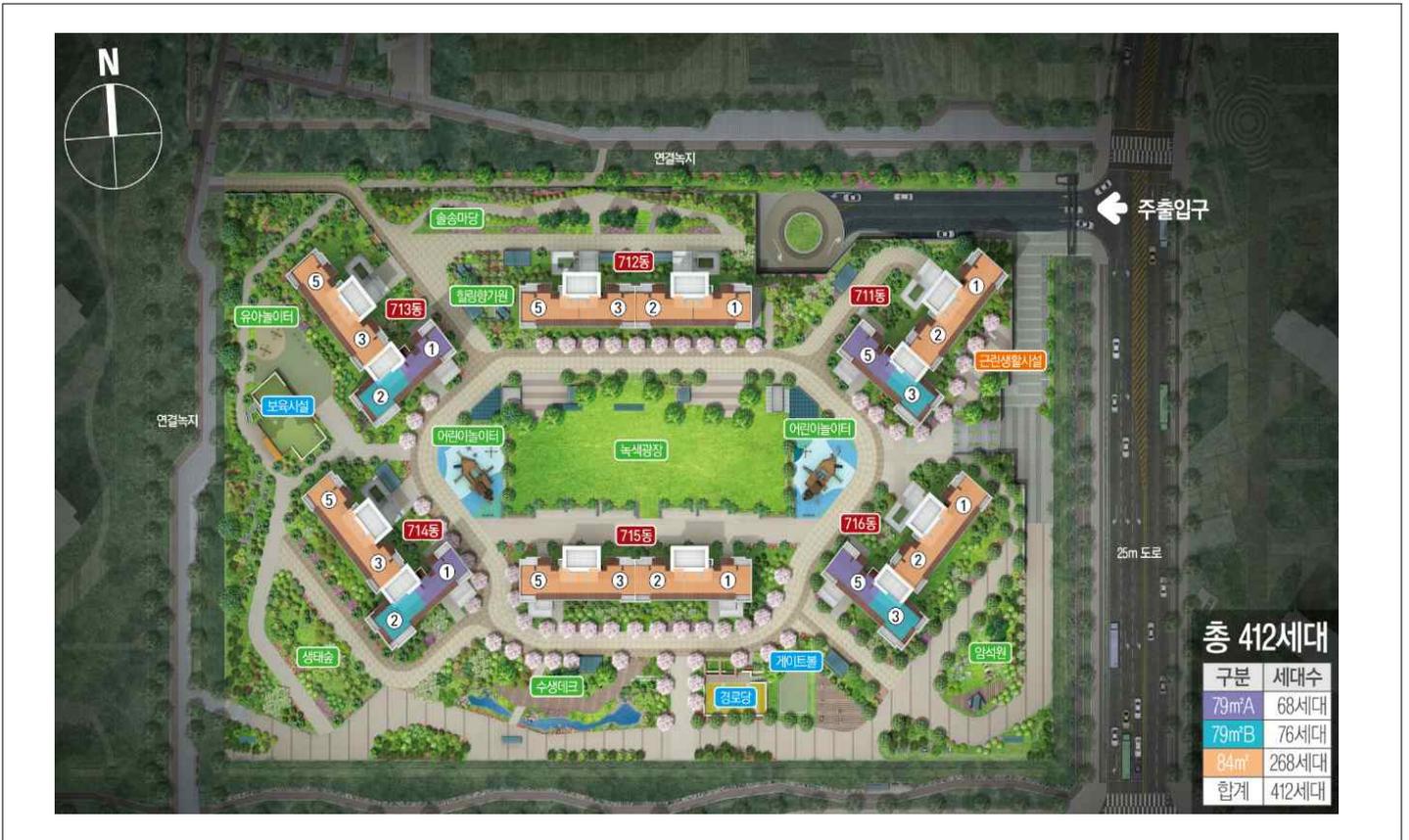


84 확장 평면도



※ 본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설계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개관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치도



투시도 / 조감도



※ 본 이미지(배치도, 조감도, 투시도) 및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